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09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조정식·남인순·염태영  
조인철·박선원·강준현  
이학영·박정현·이재관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등으로 인하여 산업계 현장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공학인은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 역할을 담당하여 미국,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공학인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위 의대 쓸림 현상, 사회적 관심 저하 등으로 공학인의 육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기술인력의 경력개발 및 직위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호 중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을 “지역기술인력”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여성기술인력의 활용 및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술인력의 역량 강화 및 산업계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2. 여성기술인력의 경력개발, 경력단절 예방 및 산업계 현장 재취업 지원
3.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성장을 위한 리더십 역량 개발
4. 산업계 현장의 여성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표준모델 확산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여성기술인력의 경력개발 및 직위 향

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 현장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공학인의 날) ① 공학 및 산업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공학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학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의4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특별회계에의 진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0조의2제4호,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37조의4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유효기간) 제37조의4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u></p> <p>5.·6.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지역기술인력</u>----- -----</p> <p>5.·6. (현행과 같음)</p> <p><u>제20조의3(여성기술인력의 활용 및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u></p> <p><u>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1. 여성기술인력의 역량 강화 및 산업계 현장 맞춤형 교육</u></p>

· 훈련

2. 여성기술인력의 경력개발, 경력단절 예방 및 산업계 현장 재취업 지원

3.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성장을 위한 리더십 역량 개발

4. 산업계 현장의 여성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표준모델 확산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여성기술인력의 경력개발 및 직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 현장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생략)

<신 설>

제20조의4(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현행 제20조의3과 같음)

제26조의3(공학인의 날) ① 공학 및 산업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공학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학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략)

② 산업기술혁신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p>용도로 사용한다.</p> <p>1. ~ 11. (생략)</p> <p><u>&lt;신설&gt;</u></p>  <p><u>12.</u> (생략)</p>	<p>-----.</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특별회계에의 진출</u></p> <p><u>13.</u> (현행 제12호와 같음)</p>
--	--